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박성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712

발의연월일: 2025. 3. 7.

발 의 자: 박성민·김성원·박덕흠

한지아 · 서일준 · 백종헌

정동만 · 김승수 · 구자근

김희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인허가의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관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한다)"를 "한다)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하고,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제2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 법」 제33조에 따른다.
- 제3조(「광업법」의 개정)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을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 제4조(「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에 따라"를 "인·허가등의"로,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을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전략계획수립권자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을 "인·허가등의"로,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5조(「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연장과"를 "연기와"로 한다.

① 무역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물품등 가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제14조의 제목 "(이의신청)"을 "(이의신청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 제6조(「산업융합 촉진법」의 개정)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해당"을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으로 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 제7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의2제5항 단서 중 "제13조의4제2항"을 "제13조의4"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4(공장설립업무 처리기준의 고시 등) 제13조의2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의 제출 및 통합 고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제1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14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16조제1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등 또는 변경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하여"를 "관하여 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 ② 관리권자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양도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③ 관리권자는 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업무를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제45조의4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8조(「산업표준화법」의 개정)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를

- "인증표시의 제거, 6개월 이내의 인증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로 한다.
- 제9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⑦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부과금 또는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37조제7항 전단 중 "제18조제7항·제8항"을 "제18조제7항"으로 한다.

제10조(「송유관 안전관리법」의 개정)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에 따라"를 "허가등의"로,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을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 제11조(「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6(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12조(「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에 따라 다른"을 "허가등의 관계"로,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을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 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같은 법 제24조세4항 후단은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에 따라 다른"을 "인·허가 등의 관계"로, "협의한 결과 동의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을 "미리 협의한 결과 동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 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

지(같은 법 제24조제4항 후단은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13조(「전기사업법」의 개정)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을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협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에도 불구하고"를 "인·허가등의"로, "제3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르고,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제14조(「전시산업발전법」의 개정)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시시설에 대하여"를 "전시시설에 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로,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제5항"을 "같은법 제11조제5항"으로, "관하여"를 "관하여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제4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관하여"를 "관하여 검사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허가등 및 검사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및 검사등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제26조까지에 따른다.
- 제15조(「집단에너지사업법」의 개정)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에 따라"를 "인·허가등의"로,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을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 제16조(「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한다)"를 "한다)에 관하여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인·허가등의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하고,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중 "처분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 제17조(「한국가스공사법」의 개정)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사가 제16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해제·인정 또는 협의(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았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보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16조의3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45일"로 한다.
- 제18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의5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 ·허가등 의제를 위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에 따	
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u>경우에는</u> 다음 각	<u>경우</u>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	
·협의 및 신고 등(이하"허가	
등"이라 <u>한다)</u> 을 받은 것으로	한다)에 관하여 시·도
보며,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	지사가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
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해서는 해당 허가등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	
으로 본다.	
1. ~ 39. (생 략)	1. ~ 39.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②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	
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	
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u>하며, 협의를 요청받은</u>	<u>한다</u> . <u><후단 삭제></u>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 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 에도 또한 같다.

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 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u>기준·효과</u> 등에 관하여는 「행 정기본법 1 제24조부터 제26조 까지를 준용하고,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 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 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 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 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③ (현행 제5항과 같음)

⑤ (생략)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허가관청 등의 조치) ①	제24조(허가관청 등의 조치)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제2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
	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
	법」 제33조에 따른다.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허가 등의 의제) ① 제42	제43조(허가 등의 의제) ①
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을 인	
가 또는 변경인가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해제 및 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	
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
<u>는</u>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	
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2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제2항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
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이 조 제1	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	
한에 속하면 미리 그 다른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u><삭 제></u>
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관련 허가등에 필요한 심의, 의	

전 청취 등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
허가 등의 의제) ① 제13조에	허가 등의 의제) ①
따라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사업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경우, 그 사업계획에 대한 다	
음 각 호의 허가·결정·인가·	
협의 또는 승인 등(이하 이 조	
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	<u>인·허가등의</u>
기관의 장과 <u>협의한 사항에 대</u>	미리 협의한 사항에
<u>하여는</u>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u>대해서는</u>
것으로 보며, 제13조에 따라 사	
업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경우에	
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u>.</u>
1. ~ 29. (생 략)	1. ~ 29.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u><삭 제></u>
의제를 받으려는 자가 사업계획	
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을 신청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에	

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생략)
- ④ 전략계획수립권자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의 내용에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이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협의를 하여야한다.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③ 인ㆍ허가등의
<u>제2항</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
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
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무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제12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무역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 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과징금 납부의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 게 할 수 있다.

- 1. 재해나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
- 2. 무역 등 경제 여건의 악화로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경우
- 3.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면

제12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무역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 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 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 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 게 할 수 있다.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있는 경우
- ② 납부기한 <u>연장과</u> 분할 납부 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제13조의2(이행강제금) ① (생략)
 -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 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써 알려 주어야 한다.
 -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 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 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 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구체 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 다.
 - ④ 무역위원회는 제10조제1항 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

② 연기와	

- 제13조의2(이행강제금) ① (현행 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물품등 가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 지에 따른다.

<삭 제>

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 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 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해당 물품등 가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무역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 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 한 기간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 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 판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제14조(이의신청) ① • ② (생 략) 제14조(이의신청 특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 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아 혅 햀 제15조(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제15조(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1조제1항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신청한 제조자등은 적합성 인증과 관련 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관 ----- 적합성 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 증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 청을 할 수 있다. 일 이내에 해당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신 설>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 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 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에 따른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2(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3조의2(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⑤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하거나 제2항에 따	
라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	
도개설 등의 허가를 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 및 제3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u>제13</u>	<u>제13</u>
<u>조의4제2항</u> 에 따라 고시된 처리	조의4
기준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6항	<u><삭 제></u>
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	
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	

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⑧ (생략) <신 설>

제13조의4(공장설립업무 처리기 준의 고시 등) ① 제13조의2제1 항 각 호(같은 항 제16호는 제 외한다)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을 마 련하여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통보받은 처리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 시한 처리기준의 변경통보를 받 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 ① ~ 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 ① ~ ④ (생략)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 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20조제2항에 따

⑦ (현행 제8항과 같음)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 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 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13조의4(공장설립업무 처리기 준의 고시 등) 제13조의2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6호는 제외한 다)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처리 기준의 제출 및 통합 고시에 관 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처분 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 는 "고시"로 본다.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 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인) ① ~ ④ (생 략)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 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20조제2항에 따 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 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6조(공장의 등록) ① ~ ⑩ (생 략)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0 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① (생략) <신 설>

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 26조까지에 따른다.

제14조의2(공장건축물의 사용승 제14조의2(공장건축물의 사용승 인)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검사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 26조까지에 따른다.

> 제16조(공장의 등록) ① ~ ⑩ (현 행과 같음) <삭 제>

① (현행 제12항과 같음)

①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등 또는 변경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저 •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기관 · 관리권자 또는 시·도지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 제37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 · 결정 · 인가 · 협 의 또는 승인 등(이하 이 조에 서 "인가등"이라 한다)에 관하 여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33조제6항 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변경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 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 10. (생략)

② ~ ⑤ (생 략)

<신 설>

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u> 따른다.</u>	
세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의 의제) ①	
관하	
<u></u> 여 제3항에 따라	
1 10 (청체코 가수)	
1. ~ 10.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제43조의3(이행강제금) ① (생략)

②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 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같은 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 고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 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하여야한다.

④ 관리권자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양도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정한 사항 외에 인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 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3조의3(이행강제금) ① (현행 과 같음)

② 관리권자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양도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있다.

③ 관리권자는 이행강제금의 처 분 및 징수 업무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업무를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수 있다.

⑤ 관리권자는 제43조제1항 또 는 제2항에 따른 처분 · 양도 의 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 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 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 다.

분 및 징수 업무를 대통령령으 로 정한 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업무를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 허가 등의 의제) ① ~ ④ (생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 | 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20조제2항에 따 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 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⑥ (생략) <신 설>

략)

<삭 제>

⑥ 관리권자는 이행강제금의 처ㅣ <삭 제>

제45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 제45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 허가 등의 의제) ① ~ ④ (현 행과 같음)

<삭 제>

- ⑤ (현행 제6항과 같음)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인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 26조까지를 준용한다.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①	제21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9조	
제6항 또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	
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	
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	
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받은자에게 한국산	
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	
게 개선하도록 명하거나, <u>인증</u>	<u>인증</u>
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표시의 제거, 6개월 이내의 인
<u>정지,</u>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	증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표시의	<u> </u>
제거 • 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는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비	
스의 종류별로 인증을 받은 자	
의 경우에는 일부 사업장에 대	
한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일부 사업장에서의 판매의 정지	
를 포함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제18조(석유의 수입·판매 부과 급) ① ~ ⑥ (생 략) ⑦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부 | ⑦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부 과금 또는 가산금의 부과처분에 |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부 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 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 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 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 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생략)

제18조(석유의 수입·판매 부과 금) ① ~ ⑥ (현행과 같음)

아

개 정

과금 또는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다.

<삭 제>

⑨ (현행과 같음)

제37조(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	제37조(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
매 부과금) ① ~ ⑥ (생 략)	매 부과금) ① ~ ⑥ (현행과 같
	<u></u> 이
⑦ 석유대체연료의 부과금 및	7
가산금의 징수에 대한 이의신	
청,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	
·충당, 과다환급금의 징수 및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에	
관하여는 <u>제18조제7항·제8항</u> ,	<u>제18조제7항</u>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 중	
"제18조"는 "제37조"로, "석유"	
는 "석유대체연료"로 보고, 제	
19조의2 중 "제19조"는 "제37	
조"로 보며, 제20조 중 "제18	
조", "제19조" 및 "제19조의2"는	
각각 "제37조"로 본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허가 등의 의제) ① 산업통	제4조(허가 등의 의제) ①
상자원부장관이 제3조제1항 본	
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공	
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허가 • 인	
가 • 면허 또는 지정(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u>제2항</u>	<u>허가등</u>
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u>의</u>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	<u><</u> 삭 제>
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	
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그 공사계	
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u>③</u> (생 략)	<u>②</u> (현행 제3항과 같음)
<u><신 설></u>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개 안 혂 행 정 제24조의6(부담금에 대한 이의신 제24조의6(부담금에 대한 이의신 청) ① 제24조의2에 따라 부담 청)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 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받은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 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에 따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 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 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 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 정 안
제9조(허가등의 의제 등) ① 제8	제9조(허가등의 의제 등) ①
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을 등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신고 •	
지정・등록 또는 허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	
군수·구청장이 <u>제3항에 따라</u>	<u>허가등의 관계</u>
<u>다른</u> 행정기관의 장과 <u>협의를</u>	미리 협
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	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② 허가등의 의제(擬制)를 받으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려는 자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
등록 신청 시에 허가등에 필요	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
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	24조부터 제26조까지(같은 법
<u>다.</u>	제24조제4항 후단은 제외한다)
	<u>에 따른다.</u>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u><삭 제></u>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	
록신청 서류와 제2항에 따른 서	
류를 받은 경우에 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제 29조제1항에 따라 공동집배송 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허가·신고·승인·인가·협의·해제·지정 및 심사(이하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 동의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15. (생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9 조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지 정하려는 경우 그 지정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u>인·허가등의 관계</u>
미리 협의한 결과 동
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1. ~ 15. (현행과 같음)
②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

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

 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 26조까지(같은 법 제24조제4항 후단은 제외한다)에 따른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3(관련 인ㆍ허가등의 의	제7조의3(관련 인ㆍ허가등의 의
제) ① 시·도지사가 제98조제1	제) ①
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 권	
한을 위임받거나 시·도지사가	
허가권자인 태양광 발전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	
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	
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	
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시ㆍ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인가ㆍ	
허가 • 승인 • 면허 • 협의 • 해제	
•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인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	장과 미리 협의한
서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	
으로 본다.	·.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u><삭 제></u>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어 하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를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 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 까지에 따르고, 처리기준의 통 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 절차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 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 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삭 제>

<u>②</u> 인·허가등	등의
	제1항

필요로 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 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 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 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_
		 	 -
<u><</u> 삭	제>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아 제27조(전시시설 건축시 허가 등 제27조(전시시설 건축시 허가 등 의 의제) ① 전시시설에 대하여 의 의제) ① 전시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를 함에 있어 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 <u>은 법 제11조제5항</u> -----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같 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 항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 • 인 가・승인・동의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하여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전시시설에 대하여 시장, 군 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 인을 함에 있어서 시장, 군수 또 ----- 같은 조 제4항 ----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 의 검사 또는 신고(이하 "검사 등"이라 한다)에 <u>관하여</u> 검사등 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3. (생략)

③ 허가등 및 검사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시시설의 건축허가신청 및 건축신고와 사용승인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령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 허가・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 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 관하여 검사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

1. ~ 3. (현행과 같음)

③ 허가등 및 검사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및 검사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아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 가등의 의제) ① 제22조제1항에 가등의 의제) ① -----따라 공사계획을 승인할 때 다 음 각 호의 허가 · 인가 · 승인 · 지정ㆍ협의ㆍ신고 또는 면허(이 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 ---- 인ㆍ허가등의 -----기관의 장과 <u>협의를</u> 한 사항에 -----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 대해서는 -----은 것으로 본다. 1. ~ 18. (생략) 1. ~ 18.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2 ②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 조에 따라 사업자의 공사계획을 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 승인하려는 경우 그 계획에 제1 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 협의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 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u><신 설></u>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 26조까지에 따른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진	제1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흥지구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시	
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u>경우에는</u> 「지역 개발 및 지원	<u>경우</u>
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결	
정・허가・승인・심사・인가・	
신고 • 면허 • 등록 • 협의 • 지정	
•해제 및 처분 등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대부 등	
(이하 "인·허가등"이라 <u>한다)</u>	한다)에
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하여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률」 제23조제3항에 따라 실시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
계획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관계	<u>서는 해당 인·허가등</u>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1. 삭 제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u><삭 제></u>
에 따른 협의를 하는 경우 실시	
계획의 사업 내용이 관계 법령	

에 적합하고 공익을 현저히 해 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에 의견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④ (생략)
- ⑤ 제4항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및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별표의

<u>3</u>	(현행	제4항과	같음)	
<u>4</u>	<u>제3항</u>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하고,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u><삭 제></u>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 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 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삭 제>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제16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인· 허가 등의 의제) <u>공사가 제16조</u> 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 가·인가·면허·승인·해제 또는 인정(이하 "인·허가등"이 라 한다)을 받았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보며,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 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 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 18. (생 략) <u><신 설></u> 제16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 허가 등의 의제) ① 공사가 제 16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 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면허·승인·해제·인정 또 는 협의(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 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았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보 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 률에 따른 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 1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 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45일"로 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제11조의5(이행강제금) $(1) \cdot (2)$ 제11조의5(이행강제금) $(1) \cdot (2)$ (생략)

행

혂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 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 금을 부과 • 징수한다는 뜻을 미 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 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구 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 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 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 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 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정

아

개

(현행과 같음)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 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 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 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 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 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 항까지에 따른다.

<삭 제>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 <삭 제> 조의4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 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 << 本 제> 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 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 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 다.